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기관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조사 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안 제1조)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요구 등의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안 제2조)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3조)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 10.)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제2조(「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검사</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생략)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 <u>진흥원</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
<신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

용을 고시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425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 락 처	(044) 203 - 4349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04